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0 선고 2018가단5423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,760,27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. 3. 7.부터 1998. 4. 5.까지는 연 14%, 그 다음날부터 1998. 7. 10.까지는 연 2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일염

별지